

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(2007.06.30)
및
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 (1976)에 관한

상설중재재판소
사건 번호 2018-55

1. 메이슨 캐피탈 엘.피. (MASON CAPITAL L.P.)
 2. 메이슨 매니지먼트 엘엘씨 (MASON MANAGEMENT LLC)
- (이하 '청구인')

대한민국
(이하 '피청구국')
(‘청구인’ 및 ‘피청구국’의 집합은 ‘당사자들’로 칭한다.)

절차 명령 제 6 호

중재판정부
Professor Dr. Klaus Sachs (의장중재인)
The Rt. Hon. Dame Elizabeth Gloster
Professor Pierre Mayer

사무국
상설중재재판소

2021 년 3 월 2 일

2021년 1월 15일, 중재판정부는 청구인 요청 CDR-32를 부분적으로 승인하고 요청된 문서를 2021년 2월 1일까지 제출하도록 명령한 문서개시에 관한 절차 명령 제 5호를 발령한 바,

2021년 2월 4일, 청구인이 중재판정부에 자발적 문서제출 및 비자발적 문서제출 기한을 2021년 2월 18일로 연장하기로 한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지한 바,

2021년 2월 23일, 피청구국은 중재판정부에 “현재 한국이 제류 중인 이씨에 대한 사건에서 검찰이 아직 개시하지 않은 증거를 제출할 수 없는 것과 관련하여 절차 명령 제 5호에 대한 구제”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바,

2021년 2월 24일, 중재판정부는 2021년 2월 23일자 피청구국의 서한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을 요청한 바,

2021년 3월 1일, 청구인은 중재판정부가 (i) 절차 명령 제 5호에 따른 문서개시 의무에 대한 청구인의 구제 요청을 기각하고; (ii) 절차 명령 제 5호에 따라 명령한 문서를 피청구국이 2021년 3월 12일까지 제출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한 바.

중재판정부는 다음 사항을 명한다:

1. 2021년 2월 23일자 서한에서, 피청구국은 한국 법무부가 검찰에 CDR-32에 상응하는 문서들의 개시를 요청했으나, 검찰이 “[한국]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”을 발동하여 개시를 거부했다고 주장한다.¹ 피청구국은 요청된 문서들이 한미 자유 무역 협정(“FTA”) 제 23.4 조에 따라 공개되면 법 집행을 저해하는 비밀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.
2. 중재판정부는 절차 명령 제 5호, 제 34-38 항에서 한국 검찰이 보유하고 있는 문서를 피청구국의 소유, 보관, 또는 통제 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고 법적 장애로 인해 문서를 입수 및 제출할 수 없다는 피청구국의 주장을 다룬 점을 상기한다. 중재판정부는 두 가지 주장 모두 기각하였다.
3. 이러한 측면에서, 중재판정부는 “한국 법원 및 검찰이 (논쟁의 여지가 없는) 국가기관으로서 본 문서개시의 목적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불가분의 부분을 구성” (절차 명령 제 5호, 제 34 항)하고 “법무부가 한국법에 의해 한국 법원 또는 검찰로부터 문서를 입수할 수 없더라도 (중재판정부는 이 문제가 동사안에 대해 결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따라서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 것임) 한국 법원 및 검찰 등 다른 국가 기관들이 이행해야 하는 국제적 의무로부터 해방되지 않는다”(절차 명령 제 5호, 제 35 항)고 판단하였다.

¹ 2021년 2월 23일자 피청구국의 서한에 첨부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법무부에 발송한 2021년 2월 17일자 서한 (영문 번역본).

4. 중재판정부는 한국형사소송법 등 한국법 및 규정이 국제법상 피청구국의 개시의무에 결정적이지 않는다는 견해를 여전히 갖는다. 따라서, 중재판정부는 한국 국내법에서의 제한이 FTA 제 23.4 조에 반영된다는 피청구국의 새로운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. 중재판정부의 관점에서, 피청구국은 요청된 문서의 공개가 법 집행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을 확립하지 않았다. 그러한 결론은 한국법이 계류 중인 형사 소송의 비공개 증거 및 기타 검찰 문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는 사실만으로 도출될 수 없다.
5. 상기에 비추어, 중재판정부는 다음을 결정한다:
 - a. 절차 명령 제 5 호에 따른 문서개시 의무에 대한 피청구국의 구제 요청을 기각한다.
 - b. 피청구국은 요청된 문서를 2021 년 3 월 12 일까지 제출하도록 한다.

중재지: 싱가포르

(서명)

Professor Dr. Klaus Sachs

(의장중재인)

중재판정부 대표